#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4747

제출연월일 : 2024. 10. 17.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 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	②
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l
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
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ㆍ파	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내거나
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을 끝낸 경우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
	<u> 우</u>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